



본 뉴스레터는 미국 5대 회계법인인 RSM McGladrey의 멤버펌이자 미국내 한국계 최대 회계법인인 Choi, Kim & Park, LLP가 다국적기업 고객을 위하여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Executive Summary 이므로 중대한 의사결정시에는 전문가의 별도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IRS 조사인력 현장투입 압박해

최근 IRS는 이전가격 조사 전담반의 현장투입 준비를 2012년 8월1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조사인력 확충에 나섰는데 안팎으로 500명 넘는 지원자가 몰려 선별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May 2012) 현장에 투입할 이전가격 조사 전담반은 각기 약 20명의 경제학자를 보유한 서부,중부,동부의 3개 지역본부로 나누어 있었지만 이번 인원확충의 목표는 경제학자의 수를 두배까지 늘리고 엔지니어, 금융전문가 등 보조인력의 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가격조사는 단순 수입공급업체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알려져

IRS 최고책임자는 2012년5월 보도자료에서 이전가격조사는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기업(inbound company)이 우선적인 타깃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단순한 수입공급업체 (low risk distributors)가 정당한 수익을 IRS에 보고하는 가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많은 한국계 지상사가 이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당국과의 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국가와 협의체계 및 공동조사 확대하고 있어

IRS는 2011년4월 영국과 공동조사(Joint audit)를 출발점으로 2012년 6월에는 캐나다와 공동조사를 시작 하였으며 주된 주제는 적정이자율 그리고 management fee 를 포함한 이전가격이라고 밝혔다.(June 2012) 또한Washington DC에서 열린 한국,일본,캐나다, 미국세무당국자 회의에서 양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국제조세이슈에 대한 마찰이 있을 때 양국 세무당국자들이 어떠한 효과적인 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를 가져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다. (December 2011)

해외거주자에 대한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 예외규정 만들어 신고 유도해

IRS는 지난 2년간 최대의 관심사였던 FBAR 적용 예외사항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납세자에 대하여 \$100,000 또는 최고잔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일정한 조건하에 면제해 주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December 2011) 이 규정은 2012년 9월1일자로 시행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거주 납세자는 별도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FBAR에 따른 신고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2. 불이행한 FBAR로 인한 조세탈루액이 미신고년도에 연간 \$15,00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해외 금융구좌를 적절한 사유로 개설했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등 성실한 납세자인 경우.

이 예외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탈루금액의 과다여부 등 IRS가 주관적인 심사를 하여 결정하게 된다.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OVDI)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

IRS는 OVDI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해외은행 또는 금융중개업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pril 2012) 지금까지 \$4.4조를 징수한 IRS는 한국을 비롯한 43개 정보교환 협정국가의 세무당국과 협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다각적인 공동조사를 천명하였다. IRS와 문제가 되고 있는 스위스의 11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미국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전달하고 형사소추를 포함한 소송 대신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1741년 설립) Wegelin & Co 은행은 IRS가 사기혐의로 정식기소 하기전 지난 1월에 소유권을 다른 은행에 넘겨버리고 미국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서(June 2012) 미국의 대응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납세자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기관은 IRS에 의무적으로 매년 보고해야

해외금융기관이 2013년1월1일 이후 미국납세자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그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FACTA 규정) 해외금융기관의 이러한 보고를 위하여 IRS에 전자등록 할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만일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자 또는 배당금 등 수익에 대해 30%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보고의 민감성과 복잡성 혹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G5 국가들은 그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국가 자국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FACTA 시행에 문제가 있는 국가는 법개정에 필요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지난 2월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미국과 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입장이 난처한 일부 국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직접 IRS와 협상과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아직 시행에 걸림돌이 많은 상태이다.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 정보 제공 압박해

IRS는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10이상 이자지급을 보고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April 2012) 이규정은 미국과 정보교환협정이 되어 있는 80개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2013년1월1일 이후 이자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은행은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정보를 보고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지급은행은 W-9BEN form을 징구하나 임시규정에서 요구하였던 예금자에게 “이자지급에 관한 정보가 예금주의 거주국가에 제공된다”는 안내문은 삭제되었다. IRS는 이러한 정보가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였으나 FACTA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이러한 정보제공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진다. 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가 없는 규정은 종전과 같다.

뉴저지 주세무당국 독자적 이전가격조사 방침 사실상 철회해

2011년6월 IRS와 다국적기업간에 체결한 사전가격협약(APA)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혼란을 주었던 (2011년9월 뉴스레터 참조) 뉴저지 주 세무당국이 이러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삼성, LG 등 한국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본부가 대부분 뉴저지주에 많은 점에 착안하여 어느 이전가격 컨설턴트가 주세무당국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봉착한 주정부가 Teradata로 알려진 컨설턴트를 해고하였다. (February 2012)

한국국세청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 공개해

2012년 4월 한국 국세청은 한국기업이 해외 관계회사들의 현지 자금조달시 보증을 서게되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의 결정모형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하였다. 기본적으로 보증 및 피보증기업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이 모형의 근간인데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IRS는 이러한 신용등급 차이방법 (Credit enhancement method) 이외에도 시장가격 방법 등 여러가지 이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대대적 세계개혁에 봉제의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조세정책의 실종과 불법자금의 천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lacklist**에 올라가 있었던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가 변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는 200여 한국계 봉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봉제의류업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과테말라에 대한 투명성 검토결과 정보교환이 않되는 불투명한 국가로 지정하고 6개월 후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pril 2012) 그러는 중 과테말라 정부는 2012년3월5일자로 대대적인 세계 개혁을 포함한 법개정을 단행하였다. 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이전가격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뿐아니라 수출입 절차를 강화하여 보고 및 감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탈세가 만연하여 조세징수율이 세계 최저권인 과테말라의 이번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지만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정착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7월중 새로운 시행세칙과 기준을 준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계 자동차 산업 멕시코로 대규모 이동해

작은 대규모 지진으로 불안을 느낀 일본 자동차 업체가 GM을 비롯한 자동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멕시코 중부지방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다. 현재 250만대 자동차를 생산하여 세계 8위에 랭크되어 있는 멕시코에는 니산, 혼다, 도요다가 70만대를 생산하고 있으나 2014년이 되면 일본차의 멕시코내 생산대수는 120만대를 넘어서게 되며 전체 투자액은 88억불이 될 것으로 보도 되었다. 마즈다가 가세한 이번 3건의 신규투자 총규모는 33억불이며 2013년과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타 국제조세 Update

- 베트남 - 2011년 이전가격조사에서 366억불을 징수한 세무당국은 2012년 세무조사의 최소한 20%는 이전가격분야가 될 것으로 예고하였다.
- 중국 - 2012년말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세율 적용이 완전히 폐지될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1/3의 외국투자기업이 이전가격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 되었다. 또한 중국내 빅4 회계법인은 향후 3년내로 경영권을 중국 로컬회계사에게 이전해야 한다. (May 2012)
- 유엔(United Nations) - OECD가 선진국 중심의 국제조세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2011년 UN이 별도의 이전가격 manual을 만들어 혼란이 있었으나 세계은행과 G20 정상회담(November 2011, 서울)은 UN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멕시코(마킬라도라) 한국기업

- 마킬라도라는 주로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2,500여 외국계 멕시코기업을 일컬으며 이중 한국계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150여 업체가 전자, 봉제 또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내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tax)규정 확정

마킬라도라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온 원자재 등 물품의 내수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당초 수입통관시 면제 받았던 부가가치세 징수하는 규정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있었다. (2011년 9월 뉴스레터 참조) 이에 멕시코 세무당국은 임시수입을 영구수입(definitive importation)으로 변경할 경우 물건을 산 구입자 (purchaser) 가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확정 고시하였다. 마킬라도라 기업은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1일 이후 거래에 적용된다.

2012년 멕시코 세법 변경

2011년 11월 멕시코의회에서 확정된 세법변경은 큰 변화를 담고 있지 않지만 마킬라도라 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세법 변경은 아래와 같다.

1. 단일세율 법인세(IETU) 관련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였으나 연간 1회 익년 3월말 보고로 단순화.
2. IETU서 발생하는 결손금에 의한 크레딧은 IETU에 한하여 향후 10년간 사용 가능
3.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전자서명을 매2년마다 갱신하였으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4. 각종 조세 환급금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변경
5. Invoice (혹은 Factura) 관련 규정 매우 복잡하여 형식(formality)요건 충족에 문제가 많았는데 규정을 한개로 통일하여 단순화 함
6. 세무당국은 Spanish가 아닌 모든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명문화



Fort Lee, NJ (201) 585-7200

Irvine, CA (949) 757-0900

San Diego, CA (858) 560-5200

Los Angeles, CA (213) 480-9100

San Mateo, CA (650) 937-1040

Montgomery, AL (334) 356-5550

LaGrange, GA (706) 416-2655

단일세율 법인세(IETU)에 적용하는 마킬라도라 조세감면 규정 연장

마킬라도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용되었던 tax incentive의 적용이 2011년 말로 종료되었으나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였다.

정상적이지 않는 인력회사 고용에 제동걸어

2012년5월 멕시코 세무당국은 불법이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인력회사를 고용하여 인건비관련 비용을 줄이거나 법이 정한 종업원 이익분배를 회피하는 것을 집중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익의 10%를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Profit sharing은 2005년부터 비용산입과 이월결손금의 적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부담은 더 많기 때문에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왔다. 세무당국의 인력회사 조사결과 불법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업이 인력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불인정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불허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KP는 자체적 또는 RSM McGladrey와 연합하여 이전가격분석을 비롯한 국제조세분야에 Big 4 firm 수준의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수십건의 이전가격 분석, IRS와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협상, IRS 이전가격조사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KP는 다수의 한국회계사를 비롯 국제회계기준 (IFRS) 분야에도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